

ZEB 2호점 '녹색친구들 연남'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2022.01.26. 촬영 사진)

토지임대부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준공공임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토지를 임대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인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이 토지를 임대하여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 하는데 신혼부부,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창의적인 상가 활용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녹색친구들 연남' 주택 입주자들은 친환경 생활을 기반으로 함께 어울려 공유·공동체 생활을 실천하는 주거 공동체의 식구입니다.

1. 입주개요

1)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04-40
(동교동27길 100)



2) 컨셉

LOW-MENT

소셜커뮤니티 사회주택 로우먼트

아파트(Apart-ment)는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오히려 이웃 간 심리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apart)있습니다.
녹색친구들 연남 (LOW-MENT)는 이웃 간 관계의 벽을 낮추고(low), 더 많은 교류를 열어두는 가까운 관계를 지향합니다.



G L O W

나답게 은은하게 빛나는 자기다움을 발산하다



S L O W

이웃과 함께하는 슬로우라이프로 삶의 여유를 누리다



F L O W

작은 교류에서 지역 연대로 공동체 가치가 흘러가다

3) 모집대상 주택

층수	호수	전유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2층	201호	22.54	9.80	32.34	1
	202호	22.54	9.80	32.34	1
	203호	22.51	9.80	32.31	1
	204호	21.08	9.16	30.24	1
	205호	20.79	9.03	29.82	1
	206호	22.0	9.56	31.56	1
	207호	20.13	8.75	28.88	1
3층	301호	22.54	9.80	32.34	1
	302호	22.54	9.80	32.34	1
	303호	22.51	9.80	32.31	1
	304호	21.08	9.16	30.24	1
	305호	20.79	9.03	29.82	1
	306호	22.0	9.56	31.56	1
	307호	20.13	8.75	28.88	1
4층	401호	22.54	9.80	32.34	1
	402호	27.79	12.10	39.89	1
	403호	20.10	8.74	28.84	1
	404호	26.02	11.31	37.33	1
5층	501호	29.81	12.95	42.76	1
	502호	29.45	12.80	42.25	1
총 세대					20

- * 모든 세대 - 1룸 (전용 테라스 설치 호수 : 403호, 404호, 501호, 502호)
- * 공급(계약)면적 : 전유면적 + 공용면적
- * 지하층과 1층 일부시설은 근린생활시설, 6층은 옥상 시설로 사용 예정

3) 임대조건

(단위: 원)

주택 유형 (모집 세대)	전유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ROOM	총 세대수	
1	201호	22.54	120,694,900	265,000	1	1
2	202호	22.54	120,694,900	265,000	1	1
3	203호	22.51	120,532,400	264,700	1	1
4	204호	21.08	110,647,600	243,000	1	1
5	205호	20.79	109,124,900	239,600	1	1
6	206호	22.00	115,480,700	253,600	1	1
7	207호	20.13	105,659,600	232,000	1	1
8	301호	22.54	120,694,900	265,000	1	1
9	302호	22.54	120,694,900	265,000	1	1
10	303호	22.51	120,532,400	264,700	1	1
11	304호	21.08	110,647,600	243,000	1	1
12	305호	20.79	109,124,900	239,600	1	1
13	306호	22.00	115,480,700	253,600	1	1
14	307호	20.13	105,659,600	232,000	1	1
15	401호	22.54	121,767,000	267,400	1	1
16	402호	27.79	147,415,400	323,700	1	1
17	403호	20.10	106,622,600	234,100	1+T	1
18	404호	26.02	135,125,200	296,700	1+T	1
19	501호	29.81	157,328,400	345,500	1+T	1
20	502호	29.45	152,148,900	334,100	1+T	1

- * 상기 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조건으로 운영합니다.
- *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법정 유지관리비, 공용 공과금, 인터넷 통신비, 보험료, 커뮤니티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부항목은 계약 진행 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호당 예상 관리비 : 8만원)
-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 49조 제7항에 따른 보증가입 면제조항에 해당되어 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일부보증 동의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보증 보험 가입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4) 부대시설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공용시설	지상 1F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룸
	지하 1F	세대 창고
	지상 4F	공용 테라스
개별시설	전 세대 (20R)	전기쿡탑,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403호, 404호, 501호, 502호	세대 전용 테라스
옥상	지상 6F	옥상시설

* 일부 시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기준일(2022.01.31.) 현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신혼부부**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포함) 및 **청년** (만 19세~39세, 혼인 중이 아닐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

* **붙임2**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예비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 가능 (입주일로부터 1주 내 전입신고 조건)

3)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청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로 확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기준은 **붙임3** 참고

4) 자산 기준

구 분	총자산가액기준	비고
청년	2억5,4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신혼부부 및 1인가구	2억9,2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5) 자동차가액 기준

입주자 자동차가액 기준	비고
3,496만원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x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1~3] 참고

3. 신청대상자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100점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 평가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심사 평가위원회가 입주지원서 내용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함
- 정량적 평가 : 40점

평가항목		배점	합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0	10	40
	100% 이하	7		
	120% 이하	5		
공동체 생활** 관련 활동기간	3년 이상	20	20	
	3년 미만	16		
	2년 미만	12		
	1년 미만	8		
별도 가점***	5개 해당	10	10	
	4개 해당	8		
	3개 해당	6		
	2개 해당	4		
	1개 해당	2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기본 신청자격은 12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가점 부여됩니다.
 ** 공동체 생활 (전체 기간 합산): 주거 공동체 생활(세어하우스, 사회주택 등),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NPO 가입이력·활동기간, 공동체 기반의 사회혁신(사회 문제 해결 등)을 추구하는 모임·행사·프로젝트 참여 이력 등 (단, 기숙사, 직장, 군대 생활, 종교활동 제외)
 *** 별도 가점 (항목별 산정): ①공동체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교육 수료(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매니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등) ②마을/지역행사 참가 경험 ③자동차 무소유 ④봉사 활동 경험 ⑤환경단체 회원 (가입 연수 무관)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적립 경험 등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 활동사진, 관련 서류 등)

● 정성적 평가* : 60점

평가항목	배점	채점 기준	합계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20	· 지금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문제와 실천적 해결방안 · 친환경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실천방안 · 녹색친구들 입주자로서 본인이 실천해보고 싶은 친환경 생활 주제와 내용	60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20	·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어떻게 존중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 ·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본인의 재능 나눔 분야와 계획 · 갈등 발생 및 입주자 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자기소개서	20	· 자유 양식 - 입주 신청동기, 이웃과 녹색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보고 싶은 활동, 본인의 관심사와 취향 등	

* 정성적 평가는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바랍니다. (각 항목당 300자 내외)

4. 일정

일 정	일 자	내용 및 공지장소	비 고
입주자 모집 공고	2022년 02월 10일(목)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 기간	2022.02.10.(목) ~ 2022.02.21.(월) 23:59	녹색친구들 공식 이메일 help@greenfriends.co.kr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주택개방	개별 안내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내 예약 URL 공지 예정	확정시 개별 안내
서류심사/ 면접자발표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발표	
인터뷰(면접)		녹색친구들 사무실 (마포구 월드컵로10길 9, 5층)	서류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면접 시 증빙(소명) 서류 원본제출/보완
최종 입주자 발표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 개별안내	
계약체결		녹색친구들 사무실 (마포구 월드컵로10길 9, 5층)	계약금 선입금 및 입주일 확정 후 계 약 진행
입주지정기간		개별 안내	

-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대상자는 최종입주대상자의 계약 및 입주 포기로 인한 잔여 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 인터뷰(면접)대상자는 인터뷰 당일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1) 신청제출 기간 : 2022.02.10.(목) ~ 2022.02.21.(월) 23:59

2) 신청제출방법

- 이메일 입주신청하기 : help@greenfriends.co.kr 로 신청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메일제목: "[녹색친구들연남입주지원]_(이름)" ex)[녹색친구들연남입주지원]_(홍길동)
 - 파일명: "(이름)_(서류명)" ex) 홍길동_주민등록등본, 홍길동_가족관계증명서
 - ※ 이메일로 입주를 신청하신 분은 별도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실 필요 없으며, 면접대상자로 선정 되면 제출 서류(원본)을 면접 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입주신청 방법 안내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확인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등기우편 : 신청 구비서류 및 입주신청서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5층) 녹색친구들
-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3) 신청제출서류

※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예정입니다.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

구 분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기준 발급)	비 고
신청구비서류	입주신청서	공고 시 첨부된 양식으로 입주대상자 전원의 이름을 명기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필요 시 자유양식으로 제출
	공동체 생활 증빙서류	협회, 법인 단체의 증명서, 가입이력 서류일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고시 첨부된 양식으로 입주대상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온라인 신청 시 출력 후 신청서류와 원본 발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등본 분리 시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세목전체, 세부내역 포함 - 반드시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자동차 등록증 (차량번호+연식+차종)	자동차 365에서 발급
	보험개발원 검증금액 또는 자동차 보험증서	보험개발원 또는 해당 보험사
	무소득자: 소득없음 사실 증명서	세무서,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소득자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개발원 검증금액 또는 자동차 보험증서는 자동차 소지자만 발행

4) 증빙(소명)서류 보완 제출 (필요 시 개별 안내)

-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제출방법: 원본으로 우편접수만 가능

5) 심사서류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원본은 추후 면접 시 제출)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계약 시 구비서류

- 1) 계약일시: 정확한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 게시, 입주대상자에 개별 공지
- 2) 계약장소: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사무실 / 변동될 시 계약안내 연락 시 확정 통보
- 3) 구비서류: 부적격자로 판명이 된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에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임대보증금 10% 금액) ②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본인 도장 (본인 서명 가능)	①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③ 계약자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④ 계약자인감도장

7. 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1) 입주 신청을 하실 때 일정과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주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입주신청서는 이메일,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이메일접수: 녹색친구들 공식 이메일 계정 help@greenfriends.co.kr
 - 우편접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9, 5층 (서교동, 유삼빌딩),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담당자
- 3) 2차 모집 공고 기간 중 1차 지원자와 계약 완료 시, 지원 호실과 다른 호실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 4)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5)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당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6)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7) 녹색친구들은 민관협력방식의 사회주택으로 입주대상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 되지 않습니다.
- 8)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위치는 공고문에 현장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 계약체결 이후 미 소명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입주 거절의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10)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11) 전체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 주도하에 최소 월 1회 입주자 회의 또는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여야 하며, 각 입주자는 그러한 활동에 연 4회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12) 준공 후 시공하자 등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13) 입주자는 만기(중도) 퇴거 시 퇴거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녹색친구들'에게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4개월 기간에 퇴거 시에도 4개월간 입주(임대료 등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중도퇴거 시 동세대 새로운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을시 새로운 입주자 입주일(최장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4) 입주자는 '녹색친구들 연남 관리규약'에 서명을 하고 입주를 합니다.
- 15)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6) 이번 회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여건상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 추진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8. 문의

*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메일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녹색친구들'로 접수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녹색친구들' 친구 추가

- 메일: help@greenfriends.co.kr

- 전화: 02-338-8163

[붙임1] 청년 및 신혼부부 정의

<p>청년</p>	<p>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p> <p>(1) 주택공급신청자가 <u>소득이 있는 경우</u>: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월 평균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완화</p> <p>(2) 주택공급신청자가 <u>소득이 없는 경우</u>: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p>
<p>신혼부부</p>	<p>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나)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p>

[붙임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정의

<p>무주택</p>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p>																					
<p>세대구성원</p>	<p>■ 세대구성원의 범위</p> <table border="1" data-bbox="347 539 1449 909"> <thead> <tr> <th data-bbox="347 539 831 577">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 <th data-bbox="831 539 1449 577">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577 831 616">• 신청자</td> <td data-bbox="831 577 1449 616"></td> </tr> <tr> <td data-bbox="347 616 831 685">• 신청자의 배우자</td> <td data-bbox="831 616 1449 685">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data-bbox="347 685 831 723">• 신청자의 직계존속</td> <td data-bbox="831 685 1449 723" rowspan="5">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data-bbox="347 723 831 761">•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r> <tr> <td data-bbox="347 761 831 799">• 신청자의 직계비속</td> </tr> <tr> <td data-bbox="347 799 831 837">•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r> <tr> <td data-bbox="347 837 831 87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td> </tr> <tr> <td data-bbox="347 875 831 909">•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 data-bbox="831 875 1449 909">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47 987 1449 1451"> <tr> <td data-bbox="347 987 555 1144">외국인 배우자</td> <td data-bbox="555 987 1118 1144">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td> <td data-bbox="1118 987 1449 1451" rowspan="3">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td> </tr> <tr> <td data-bbox="347 1144 555 1417">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 data-bbox="555 1144 1118 1417">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td> </tr> <tr> <td data-bbox="347 1417 555 1451">태아</td> <td data-bbox="555 1417 1118 1451">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 </tr> </table> <p>■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p>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붙임3]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110%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120%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입주자격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